

근로계약서

'미소 재가복지센터' (이하 "사용자 또는 회사" 라 함)와 '근로자' (이하 '근로자 또는 직원'이라 함)은 노동관계 법령과 근로계약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기간) ① 근로계약 기간은 2026 년 월 일 부터 2027 년 월 일 까지로 한다. 회사와 직원이 계약의 갱신 또는 연장에 합의하지 않은 한, 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 시 자동으로 근로관계는 종료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계약 기간 도중에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사망, 입원, 교체요청 등으로 담당할 요양급여 대상자가 상실되는 경우 계약 종료로 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타 대상자" 근무배정을 권장하고 고용유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

- ② "회사"가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대체근무지 제공에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자의적으로 "타 대상자" 장기요양 급여제공 업무를 거부할 시,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사를 확인 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자발적 사직으로 사직처리 한다.
- ③ "근로자"가 실업급여 부정수급 등의 목적으로 근로자의 조건에 맞는 수급자 근무배정 요구 또는 특별한 사정없이 계속근무를 거부하거나 "사용자"를 협박, 중용할 시에는 관할 관청에 고발될 수 도 있다.

제2조 (근로장소 및 직무) ① 근무장소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의 소재지 및 생활범위지역으로 한다.

② 근로자의 직무: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정서지원, 등 '요양보호사 급여제공범위'를 직무로 한다.

③ 직원의 직무와 근로장소는 회사의 업무상 필요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다.

제3조 (근무형태,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① 근무형태, 근무일 : 주간근무, 시간제 근무로 주 5일, 월~금요일 까지로 한다.

② 근로시간은 : 부터 : 까지로 한다,

③ 1일 240분 이상근무시 30분, 480분 근무시 60분의 휴게시간을 제공하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한다.

④ 사업의 특성상 또는 '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대상자'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매월 제공되는 일정표의 시간을 적용하여 '근로자'에게 통보한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정함에 동의한다. 또한 근무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연장,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 조정하여 확정하며, 이에 따른 변경에 동의한다.

⑤ 태그(RFID) 측정시간과 급여제공계획서에 의한 시간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된 시간(월한도액)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한다.

제4조 (임금) ① 요양급여 제공에 대한 임금은 기본시급 10,320원이며, 근로제공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시급총액에는 각 수급대상자의 인정등급별로 기본시급, 제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본시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선 정산 후, 남은금액을 기타수당으로 함	시급 총액
10,320	2,064	816	13,200원

- ② 임금산정의 편의를 위하여 연차수당을 월급여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근로자'는 언제든지 연차휴가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 ③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를 정산하여 익월 25일에 '근로자' 명의의 통장으로 지급한다. (휴일의 경우는 전일 지급)
- ④ '사용자'는 관련 법규에 의거 '근로자'의 임금에서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을 원천징수로 공제한다.

제5조 (수습기간) ① 회사의 규정에 준하여 신규로 채용된자는 3개월간의 수습기간을 적용하며, '근로자'의 업무능력, 업무태도, 고객의 불만접수 등 업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시에는 예고없이 해고할 수 있다.

제6조 (유급휴일 및 연차휴가) ①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 및 시간을 개근한 경우, 매주 일요일을 유급주휴일로 부여한다.

- ② 주휴수당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4주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동법 제55조(휴일)에 따라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③ 연차수당 : 연차수당을 시급 총액에 포함하여 지급하되, 연차 사용에 대해서는 근로자 요청 시 휴가로 부여하며, 해당 연차일에 별도의 연차수당은 지급하지 않는다
- ④ 1년을 초과하는 근속자에게는 연차휴가 15일을 부여하며, 계속근로 3년을 초과하는 때에 1일을 가산하며, 그 후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다만 최대 연차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 ⑤ '근로자의 날' (5월 1일) 은 유급휴일로 하며, 관공서의 공휴일은 근로 의무가 없는 날로 한다
- ⑥ '근로자'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년간 소정의 근로일의 80%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한다.
- ⑦ 위 각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유급휴일을 특정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 (퇴직금) ① 계속근로 1년 이상일 때 1년당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한다. 또한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 ② 1주 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주는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하며, 가족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보장되며, 그 외 퇴직금에 관한 사항은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

2. 수집 정보의 활용범위
- 근로자 및 수급자 급여제공 관련에 필요한 정보의 활용, 장기요양계획, 욕구조사, 장기요양서비스 질 수준 향상 등에 활용

- 배상책임보험, 4대보험,세무신고, 등 관련기관 요청시 정보제공, 노인장기요양보험 사업 운영 주체 등에 대한 정보제공
3. 보유 이용기간
- 수집된 정보로 생성된 서류 및 관련 정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보존기간(최대5년) 민사 10년을 따름
4. 정보보안 내용에 대해서 재직 및 퇴직후에도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비밀유지를 지킬것을 서약합니다.
- 재직 중 취득한 영업비밀,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 등 을 제 3자에게 무단으로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 기관의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보안 교육 수강 및 준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동의자 : 근로자

(서명 또는 인)